

# 무형의 민속문화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장 철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학 교수)

1. 머리말
2. 민족문화와 형성의 배경
3. 예능·민속문화재의 개념
4. 조사활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5. 문제점 및 맺음말

## 1. 머리말

한 나라의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구성원인 민족의 문화적(文化的)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는 바로 일상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발달한 것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문화적 정체성은 바로 이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연구는 또한 민족의 생활정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정서의 확인이나 탐색은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그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일제라는 식민지 경험과 함께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민족적 수난의 역사와 분단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민족정서의 탐색과 확인은 민족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정서의 탐색은 '인간다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 이외에 '민족문화의 정통성 확립'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갖는다. 그리고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문화의 청산, 정치적 이념에 의한 문화적 격차의 회복 초월과 통일문화의 형성, 그리고 산업화와 획일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 세계문화 속에서 한민족문화의 특수성 보존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포괄할 수 있는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성격과 개념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고와 전망을 하기로 하겠다.

## 2. 민족문화 형성의 배경

조선왕조의 사회가 외세와 일제에 의해 와해된 지 근 100여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또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지 50년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문화는 비록 유교와 주자학이라는 중국의 통치이념을 기준으로 발달시킨 것이라고 할지라도, 고려시대까지의 전통문화를 수렴하여 명실공히 민족문화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조선왕조가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유교와 주자학의 종교문화적 한계에서 찾아진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주자학은 이전의 무속, 도교, 불교가 갖고 있던 종교문화적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까지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발달한 전통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주자학적 지배원리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의 왕궁문화와 국가의 의례제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조선시대의 지방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적인 행정제도와 함께 농업적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조선시대의 지방문화는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중심지, 즉 읍치(邑治)의 문화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읍치문화에서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자학적 지배이념과 지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전통적인 문화형식을 거의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배계층의 주자학적 문화의식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띠었던 지방의 문화적 전통, 즉 조선시대 이전의 불교적, 민간신앙적 문화전통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행정의 책임자, 즉 현감 등이 2년을 만기로 하여 자주 교체되는데 비해서, 그 지방의 행정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주도하던 세력은 바로 농민계층과 일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토착, 세습적 향리들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지방문화는 바로 지방의 '토박이집단', 즉 농민들과 향리들이 전승담당자로서 굳건한 지역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비유교적인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1)</sup> 그리고 조선왕조의 산업정책은 '사농공상'에 관한 유교적 직업관념에 따라 농본주의를 우선하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조선왕조의 문화가 농업문화였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농업은 일부 관개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천수답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형 농경으로서, 그 수확결과는 항상 불확실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풍농을 기원하고 사람과 가축의 평안을 비는 농경신앙을 발달시켰으며, 또한 농작물의 경작체계에 따라 계절 '세시의례·놀이' 등과 같은 공동체 문화를 발달시켰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사직신앙과 기우제신앙이 제도화되어, 연례적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공동노동을 위한 풍물·두레 등과 함께 무속의례인 '굿·놀이'에 의존하여 여가를 즐기거나, 공동생활 집단인 마을을 경계로 하는, 그리고 마을을 또 하나의 의례단위·문화전승단위 및 보존단위로 삼아 '마을신앙'으로 알려진 '영역의례'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공동체 놀이와 의례들을 통해서 그들은 일상적인 공동 생활체험 및 노동체험과 함께 평등원리에 근거한 자연의식과 대동성을 강화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유교문화의 특색은 혈연의식에 근거한 조상숭배 사상과 함께 학연의식에 근거한 선현숭배 사상에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는 주로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한성에는 왕가의 조상숭배를 위한 종묘와 유교의 선현숭배를 위한 문묘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이 설치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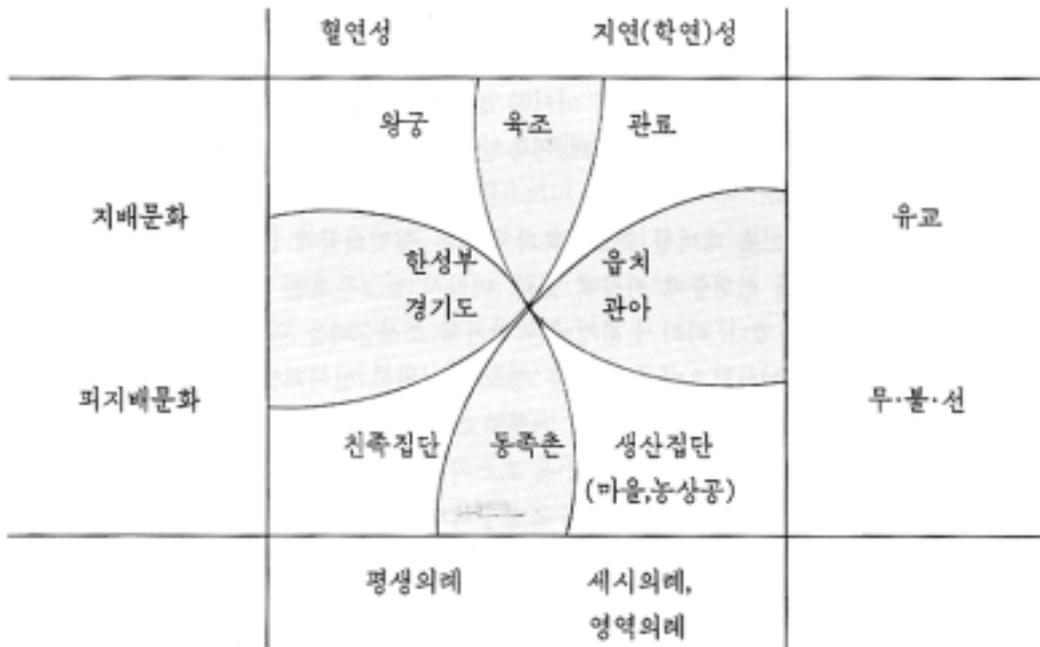
1) 장철수, 1994. 「향토축제와 현대 사회」(『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영문화재단)

연례적으로 일정한 날에 대사(大祀)와 중사(中祀)의 규모로 국가적 제의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조상숭배를 위한 사당을 종가집에 설치하여 4대봉사를 하거나, 묘소의 치장과 함께 묘제를 지내기 위한 시설로서 재실(齋室) 등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상숭배의례는 혈연집단 내의 세대별 수직관계<sup>2)</sup>와 함께 정숙한 분위기에서 엄숙하게 지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등원리에 근거하여 발달시킨 자연의식에 의한 농업문화나 ‘굿·놀이’가 자유롭고 활달한 마을의 공동체 행사와는 대비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교문화는 일·생산활동과 구분되는 차원에서의 여가활동으로서 부적절했다. 따라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문화는 2중성을 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지배문화를 상징하는 왕궁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왕궁문화의 특색은 우선 왕권 및 지배권의 전통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왕궁문화는 중국 고대의 왕권과 지배권으로부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반도 내에서의 지배권,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의 지배권을 잇고 있기 때문에 그 왕궁문화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따라서 그 문화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으로 고도의 예술성을 추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배문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반면에 피지배문화는 집약적 농업의 역사적 유구성에 의해서 일상생활단위의 민속이 갖는 지연성과 함께 대동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예술성과 대동성은 한국 민족문화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조선시대 이래 민족문화의 형성원리



〈도표 1〉 조선시대 이래 민족문화의 형성원리

2) 혈연집단내의 인간관계는 이름자의 항렬과 연치에 의해서 엄격하게 수직적으로, 그리고 세대별 권위의식에 의해서 서열화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적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과 이후의 한국적 정치상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문화로서의 왕궁문화의 관료문화를 사회제도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둘째 혈연적 배타성을 부각함으로써 혈연의식을 약화시켰으며, 셋째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마을과 친족집단과 읍치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기반을 발탁하였으며, 넷째 전통적 문화의 종교·신앙적 배경인 무속과 민간신앙을 미신시하여 타파시켰다. 그 결과 왕궁문화는 경제적 후원세력을 상실하여 분산되고 파편화되었다. 따라서 500년간을 지탱해 온 지배문화로서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상실하고, ‘민족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문화는 소수 유림집단의 민속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경제적기반을 상실한 마을과 친족집단과 읍치는 그문화 보존 역량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그나마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민간신앙은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여 상당히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2종류의 문화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에 의해 상징성과 예술성이 높은 지배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피지배문화는 그 경제적 배경이 박탈됨에 따라 실용성과 대동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도달한 고도의 유교 및 민족문화적 수준의 지배문화는 똑같이 혈연성과 지연성에 근거하여 발달하였던 피지배문화 속으로 용해되어 형식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이 광복과 6·25전쟁을 통한 정치적 이념의 갈등과 함께 급격한 산업사회로 인하여 발생한 계층간의 이익갈등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를 해체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잔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조선시대의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가 갖고 있던 문화적 차이를 하나의 예술성과 권위성(상징성)이 피지배문화의 실용성과 대동성 속에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경제적 조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채 잔존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지배문화의 예술성과 상징성, 그리고 피지배문화의 대동성과 실용성이 어느 정도 되찾아질 수 있었다.

### 3. 예능·민속문화재의 개념<sup>4)</sup>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문화재(文化財)’라는 말은 한 민족집단(民族集團)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인류(人類) 보편적(普遍的)인 동시에 민족(民族) 특수적(特殊的)인 성격을 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집단의 생활체험의 표현이며, 그 표현물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산들이라고 하겠다. 이 체험은 일반적으로 “정서(情緒)”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서라는 말은 특정한 집단(集團)의 특수성(特殊性)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로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보편적(普遍的)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체험(體驗)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더 적당하다고 본

3) 장철수, 1995.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민속예술」(『광복 50주년 기념 민속예술축제 학술회의』)

4) 장철수 외, 1992 『文化財 및 傳統文化 管理機能 強化方案研究』(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다. “체험(體驗)의 표현물(表現物)”은 그 차원에 따라서 생활(生活), 제도(制度), 관념(觀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3차원의 체험은 바로 민족집단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 시기마다 그 내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분문화현상(部分文化現象)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민족문화의 전통적인 문화관(文化觀)에 의해서 전통문화(傳統文化)에 통합된다. 이렇게 하여 전통문화는 그 집단의 생존을 영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3차원의 체험 가운데, 생활(生活)의 차원은 개인(個人)의 육체적(肉體的) 생존체험(生存體驗)과, 제도(制度)의 차원은 집단(集團)과 사회(社會)의 생존체험(生存體驗)과 그리고 관념의 차원은 인간(人間)의 궁극적(窮極的) 존재(存在)에 대한 체험과 각각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가운데서 생활(生活)의 표현물(表現物)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자연(自然) 및 생태적(生態的) 조건(條件)과 생활집단(生活集團)의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수준(水準)에 따라서, 그리고 당대의 기술수준(技術水準)에 따라서 그 형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각 부분문화(部分文化)를 이루며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 또한 제도(制度)의 표현물(表現物)은 특정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동안 가장 바람직한 문화현상으로서 나타난다. 반면에 당시에는 하나의 지배문화(支配文化)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또는 시대가 바뀔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에는, 또 하나의 부분문화(部分文化)로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만이 보존된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물들은 과거에 어떠한 문화관과 가치관에 의해 어떠한 사회제도가 있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적(資料的) 가치(價值)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관념(觀念)의 표현물(表現物)들은 앞에서 본 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문화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나, 이것들도 또한 지배계층과 통치이념의 변화에 따라 지배문화에서 부분문화로 바뀐다.

이와같이, 과거의 지배문화(支配文化)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부분문화(部分文化)로 변하면서, 여전히 그 민족집단의 생활정서에 알맞을 경우만이 아니라,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살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민족문화화(民族文化化)되어 영속성을 갖게 된다. 이때에 그 부분문화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다만 그 의미의 중요성만을 지닌 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현대의 상황에서 부분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표현물들은 하나의 기념물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화재들은 바로 그 민족집단의 문화창조(文化創造)의 수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물들 또한 각각 3가지 종류의 전승수단을 통해서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표현물(生活表現物) : 물질전승(物質傳承) : 의(衣), 식(食), 주(住), 생활도구(生活道具), 생산도구(生産道具)등
- 행위전승(行爲傳承) : 생업기술(生業技術), 공예기술(工藝技術), 춤, 탈춤 등
- 언어전승(言語傳承) : 민요(民謠), 판소리, 창(唱), 방언(方言) 등
- 제도표현물(制度表現物) : 물질전승(物質傳承) : 궁궐(宮闕),

관아(官衙), 성지(城址), 봉수대(烽燧臺), 무기(武器), 전적(典籍) 등

행위전승(行爲傳承) : 궁중예악(宮中禮樂), 종묘제례(宗廟祭禮), 석전제례(釋奠祭禮) 등

언어전승(言語傳承) : 궁중언어(宮中言語) 등

관념표현물(觀念表現物) : 물질전승(物質傳承) : 동제당(洞祭堂), 무신당(巫神堂)(무화(巫畵)와 무구(巫具)포함), 사찰(寺刹)(불화(佛畵)와 불구(佛具)포함), 향교(鄕校), 분묘(墳墓), 영정(影幀) 등

행위전승(行爲傳承) : 굿, 영산재(靈山齋) 등

언어전승(言語傳承) : 무가(巫歌), 범패(梵唄) 등

이러한 체험의 표현물들은 공간적으로 경관과 식생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관이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적(地理的)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農業)을 위주로 하여 발달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지리적 조건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관은 이렇게 “마을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읍치경관(邑治景觀)” 또는 “도읍경관(都邑景觀)”으로 구분된다. 마을이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단위(生活單位)라고 한다면, 읍치 또는 도읍은 소비와 행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정단위(行政單位)라고 하겠다. 따라서, 크게 보아 읍치경관은 마을경관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관(景觀)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自然環境)”을 가리키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연환경은 이미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의 자연환경 가운데 일부는 주거지(住居地)나 농경지(農耕地), 또는 땀감을 조달하는 곳이나 놀이장소로, 일부는 분묘(墳墓)로 사용하므로써, 이미 생활문화(生活文化)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환경 또한 때에 따라 수렵(狩獵)이나 채집(採集)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생활문화의 공간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관은 이미 문화적(文化的)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경관(景觀)은 바로 과거의 생활문화관(生活文化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관(景觀)은 한번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신할만한 가치와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경관이 나타나지 않는 한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생활관(生活觀)이나 가치관(價値觀)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생활방식과 함께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혁신(技術革新)이나 경제적(經濟的) 조건(條件)이 뒤따를 때에나 가능할뿐더러, 그것도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이루어 지므로,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은 여전히 과거의 경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전형적 경관(景觀)의 구성은, 마을이든 읍치(邑治)든, 크게 보아 주거공간(住居空間)·생산(生産) 및 노동공간(勞動空間)(논, 밭, 산, 관아(官衙))·휴식공간(休息空間)(정자나무, 정자)·의례공간(儀禮空間)(서낭굿, 굿당, 사당(祠堂), 산소(山所), 절) 그리고 교육공간(教育空間)(서당(書堂), 서원(書院))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간이용은 현재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성격이 아직도 농업문화적인 것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무속(巫俗),

불교(佛敎), 유교(儒敎)와 같은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관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만족 전체의 문화사(文化史)가 마을이라는 작은 생활단위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마을의 경관(景觀)이 보여주고 있는 구성(構成)은 농업문화적 자연경관(自然景觀)과 함께 과거문화의 유산인 동시에 현재까지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 종교적 생활문화의 모습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마을에 들어서 있는 교회(敎會)도 새로운 경관요소(景觀要素)로서,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생활공간(生活空間) 속에 흡수되고, 첨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개설이나 제방축조와 같은 공사도 기존의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시행하여, 첨가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칫 효율성과 실용성을 우선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전통적(傳統的) 생활문화(生活文化)의 경관을 파괴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생활문화의 지혜를 무시하므로 해서 오히려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생(植生)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식생에 의해서 의식주(衣食住)의 생활문화가 형성되며, 그 밖의 문화적 활동의 재료(材料)가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바로 자연적(自然的) 식생(植生)에 대한 체계적(體系的) 지식(知識)이며, 그 활용방법(活用方法)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자원(資源)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것을 통털어 흔히 “토종(土種)”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가리켜 “향토음식(鄕土飲食)”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물건을 “토산품(土產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재료(材料)와 함께 기술(技術)이나 형태(形態)가 고유한 것으로서,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그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특수성이나 고유성으로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짐으로 해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다루는 기술과 함께 지식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문화(過去文化)의 일부를 잃어 버리는 것이며, 그만큼 문화적(文化的) 역량(力量)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제 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유형(有形)의 문화적 소산(文化的 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기념물(記念物) :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상(歷史上)·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藝術上)·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 및 동물(動物)(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를 포함한다)·식물(植物)(자생지(自生地)를 포함한다)·광물(鑛物)·동굴(洞窟)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민속자료(民俗資料) : 풍속(風俗)·관습(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衣服)·기구(器具)·가옥(家屋) 등으로서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추이(推移)를

이해(理解)함에 불가결(不可缺)한 것.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보았을 때, 문화재란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예술적(藝術的)· 관상적(觀賞的) 가치(價値)가 있고 국민생활(國民生活)을 이해(理解)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지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自然資源)과 함께 경승지(景勝地)와 같은 자연지리적(自然智理的) 조건(條件), 일상생활(日常生活) 자료(資料), 그리고 모든 과거의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 민족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의 모든 자연 및 인문, 지리적 환경을 문화재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화재라는 개념속에는, 본질적으로 크게 자연적(自然的)인 것과 인문적(人文的)인 것으로 구분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망라하고 있으며, 성격으로 보아서도 고도의 문화 및 예술의 차원을 띤 것과 평범하면서도 흔한 일상생활적인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라는 말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文化的) 활동(活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앞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문화재의 종류, 즉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그리고 민속자료(民俗資料)의 구분도 그러한 배경속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는 우선 전승형태(傳承形態)와 성격(性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이라는 구분은 그 전승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모든 문화재를 이것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념물(瞻眠物)이나 민속자료(民俗資料)에도 유형적(有形的)인 것과 함께 무형적(無形的)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있어서도 도구(道具)나 악기(樂器), 또는 의상(衣裳)과 같은 유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조사연구해야 하는 민족문화와 함께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조사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조선왕조 지배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 (1)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와해되기 전의 왕궁의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종합적 연구

가. 행위문화재 : 진연, 진찬, 궁중예절, 진찬악, 정재무, 정재악 등

나. 물질문화재 : 진연용구, 진찬용구, 궁중음식, 악기, 궁중의례용품, 궁중공예품

다. 언어문화재 : 궁중용어

##### (2)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와해된 사회제도적 국가의례에 대한 조사연구

가. 행위문화재 : 사직제의, 종묘제의, 문묘제의, 명산대천제의, 왕릉제의 등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속절제(俗節祭) 등에 관한 내용 등

나. 물질문화재 : 대사·중사·소사 등의 제의용구

다. 언어문화재 : 약장 등

##### (3)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와해된 관료문화의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조사 연구

- 가. 행위문화재 : 과거제도, 삼일유가, 신래례, 지방 성황제, 향교 석전례 등
- 나. 물질문화재 : 경공장 및 외공장의 공예기술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등
- 다. 언어문화재 : 고문서 등

2) 조선왕조 피지배문화에 대한 연구

(1) 혈연의식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유교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 가. 행위문화재 : 관혼상제, 서원향사 등
- 나. 물질문화재 : 사당, 제실, 서원, 신주 등
- 다. 언어문화재 : 축문, 홀기, 고문서 등

(2) 자연의식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마을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가. 행위문화재:

가) 신앙행위 : 가정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점복, 주술, 의료, 귀신, 도깨비, 풍수등

나) 생활과 생업기술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경, 수산, 사냥, 축산, 민간의료 등

다) 세시 및 연회 : 세시의례, 연회와 놀이, 음악, 무용, 탈놀이, 인형극 등

나. 물질문화재 : 자연자원(토종), 신앙용구, 의생활 도구, 식생활 도구, 주생활, 민속공예(목공예, 도자기공예, 화각공예, 나전공예, 지공예, 자수공예, 초고공예, 매듭공예 등)

다. 언어문화재 : 지명, 신화, 설화, 옛말, 속담, 수수께끼, 방언 등

이 가운데서 제도문화의 상당부분은 현재 ‘무형문화재’와 그리고 피지배문화의 대부분은 현재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의 학술적 조사연구, 역사적 고증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수집,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리방법의 조사연구, 백제·신라·가야문화권 지역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sup>5)</sup>를 임무로 하여 설립된 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 부속기구중의 하나로서 ‘예능·민속연구실’이 설치되고 그 업무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음향영상자료실 운영”<sup>6)</sup>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에 의해서 비로소 무형(無形) 및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는 비로소 본격적인 전문연구가 가능하였다.

#### 4. 조사활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예능·민속연구실의 업무분장에 따라 현재까지 이루어진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조사활동은 크게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민속문화재 조사연구의 2분야로 나뉘어 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1) 음악조사(音樂調查)

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1995 『문화재연구소 20년사』 24쪽.

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1995. 위의 책. 26쪽.

- 가. 이충선 기악곡조사(李忠善 器樂曲調查)
- 나. 이용우 무악조사(李龍雨 巫樂調查)
- 다. 기창수 호남좌도농악조사(奇昌洙 湖南左道農樂調查)
- 라. 이수영 염불조사(李秀英 念佛調查)
- 마. 양소운 황해도민속기악곡조사(梁蘇云 黃海道民俗器樂曲調查)
- 바.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全羅南道國樂實態調查)
- 사. 한애순 판소리심청가조사(韓愛順 판소리沈淸歌調查)
- 아. 강순영 가위금산조조사(姜順令 伽倻琴散調調查)
- 자. 임실필봉농악조사(任實筆峰農樂調查)
- 차. 전라북도국악실태조사(全羅北道國樂實態調查)
- 카. 삼현육각조사(三絃六角調查)
- 타. 향제풍류조사(鄉制風流調查)
- 파. 산조조사(散調調查)
- 하. 시나위조사(調查)
- 거. 판소리유파조사(流波調查)
- 너. 어업요조사(漁業謠調查)
- (2) 무용조사(舞踊調查)
  - 가. 이용우무가조사(李龍雨巫舞調查)
  - 나. 부포놀이춤조사(調查)
  - 다. 무무조사(巫舞調查)
  - 라. 무무(巫舞)춤사위조사(調查)
  - 마. 원무조사(圓舞調查)
  - 바. 승무(僧舞)·살풀이춤조사(調查)
  - 사. 한량무(閑良舞)·입춤·검무조사(劍舞調查)
- (3) 연극조사(演劇調查)
  - 가. 굿놀이조사(調查)
  - 나. 화장예놀이조사(葬禮놀이調查)
- (4) 공예기술조사(工藝技術調查)
  - 가. 금속공예조사(金屬工藝調查)
  - 나. 목칠공예조사(木漆工藝調查)
  - 다. 직물공예조사(織物工藝調查)
  - 라. 풀공예조사(工藝調查)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무형문화재는 그 내용과 예술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주로 조선왕조시대의 지배문화로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의 내용들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조사보고서가 출간된 ‘지정문화재’<sup>7)</sup>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주로 지방에서 전승된 것들로서, 지방의 관료나 읍치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내용들은 전승형태에 따라 주로 행위·언어 문화재(행위, 음악, 가사, 기술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위의 내용들은 주로 남한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7) 1994년 12월 31일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94개가 지정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무형문화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성격(性格), 말하자면 위의 무형문화재의 발달이 어떠한 행정적 배경 속에서 발달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조선시대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가운데에서 어떠한 성격에 속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격불명의 민족문화재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지배문화의 한 형태인 왕궁문화(王宮文化)를 배경으로 하여 발달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조선왕조의 지방문화(地方文化) 및 관료문화(官僚文化)에 근거를 두고 발달한 무형문화재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지역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넷째, 무형문화재의 한 전승형태인 물질문화재(物質文化財)(도구, 기구, 악기, 공예품 등)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각 지방과 지경의 특산 및 물산에 관한 자료, 즉 토종(土種)의 내용과 함께 조사연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섯째, 지역적으로 보아 북한지역(北韓地域)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점은 월남한 전승자의 고령화와 소멸에 따라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여지지만, 민족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공동 및 합동조사를 통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형문화재의 내용별,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 2) 민속문화재조사연구(民俗文化財調查研究)

### (1) 무형민속조사(無形民俗調查)

- 가. 세시풍속조사(歲時風俗調查)
- 나. 구비전승조사(口碑傳承調查)
- 다. 전통다도풍속조사(傳統茶道風俗調查)
- 라. 무의식조사(巫儀式調查)
- 마. 산간신앙조사(山間信仰調查)

### (2) 유형민속조사(有形民俗調查)

- 가. 농기구조사(農器具調查)
- 나. 운반구조사(運搬具調查)
- 다. 불교의식용구조사(佛敎儀式用具調查)
- 라. 수산구조사(水產具調查)
- 마. 식생활용구조사(食生活用具調查)
- 바. 어업용구조사(漁業用具調查)
- 사. 운반용구조사(運搬用具調查)

### (3) 민속종합(지역별)조사(民俗綜合(地域別)調查)

- 가. 전라남도(全羅南道)
- 나. 전라북도(全羅北道)
- 다. 경상남도(慶尙南道)
- 라. 경상북도(慶尙北道)
- 마. 제주도(濟州道)

- 마. 충청남도(忠淸南道)
- 사. 충청북도(忠淸北道)
- 아. 강원도(江原道)
- 자. 경기도(京畿道)
- 차. 서울
- 카. 황해도(黃海道) 및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
- 타.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
- (4) 민속종합(분류별)조사(民俗綜合(分類別)調查)
  - 가. 농악·풍어제·민요조사(農樂·豐漁祭·民謠調查)
  - 나. 향토음식조사(鄉土飲食調查)
  - 다. 주생활조사(住生活調查)
  - 라. 의생활조사(衣生活調查)
  - 마. 예절조사(禮節調查)
  - 바. 풍수조사(風水調查)
  - 사. 산속조사(産俗調查)
  - 아. 민간의료조사(民間醫療調查)
- (5) 향토문화재조사(鄉土文化財調查)
  - 가. 해서풍어제(海西豐漁祭)
  - 나. 여주답교놀이(驪州踏橋)
  - 다. 대현울곡제(大賢栗谷祭)
  - 라. 난계예술제(蘭契藝術祭)
  - 마. 당진기지시줄다리기(唐津機池市)
  - 바. 간늑문화제(干勒文化祭)
  - 사. 남원춘향제(南原春香祭)
  - 아. 3·1민속문화제(民俗文化祭)
  - 자.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祝祭)
  - 차. 소백산철쭉제(小白山)
  - 카. 한라문화제(漢拏文化祭)
  - 타. 처용문화제(處容文化祭)
  - 파. 남도문화제(南道文化祭)
  - 하. 진도영등축제(珍島靈登祝祭)
  - 거. 남원춘향제(南原春香祭)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조사내용은 위의 무형문화재의 조사에서 기재된 문체가 상당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승형태에 있어서 행위·물질·언어문화재를 망라하고 있는 뿐만아니라 또한 지역적으로도 남북한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형문화재들의 대부분이 조선왕조의 지배문화에 근거를 두고 발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들은 비교적 민간에서 폭넓게 전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12권으로 발간된 ‘한국민속종합보고서’라고 하겠다. 이자료는 각 도별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개괄적 조사로서, 한 시대의 도별 민속문화재에 대한 일반적 성격을 밝히

는데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로는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주제별 내용과약을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실시하고 있는 주제별 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보완하고 있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지역별 조사사업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할 때에 시작됨을 고려했을 때, 그 이후 산업화된 지 1세대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또다시 한번 지역별 민속종합조사를 통하여 민속문화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산업화시대의 전통문화재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과 함께 남북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이나 월남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지역민속종합조사(北韓地域民俗綜合調査)’의 필요성은 그 조사 방법론과 함께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 50여년을 맞고 있는 현재, 오로지 전통적인 민족문화와 생활문화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민속문화재를 통해서만 남북한 간의 생활양식과 수준의 격차에 의해서 생기는 문화적 이질감을 회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주로 지연의식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지역이나 마을문화를 중심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혈연의식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유교적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가 함께 보완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이래로 혈연의식과 지연의식이라는 낱줄과 씨줄을 통해서 엮어진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속문화재의 조사는 통일문화를 위한 것이든 산업화 시대에 민족문화의 창조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든, 지연과 혈연의식에 바탕을 둔 대동성(大同性)을 찾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5. 문제점 및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조사연구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나 정책적인 목적으로나 그렇게 체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물론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함께 서구적 학문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서 민족문화의 연구가 갖는 학문적 가치에 대한 몰인식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한 정치적·학문적 배경과 함께 정책적으로도 사라져 가는 민족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사·연구된 결과들은 눈에 띄이는 대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인 조사연구의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傳統的)인 민족문화(民族文化)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나 정책자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 고도로 발달된 왕궁문화와 지배문화는 일제에 의해 버려진 채, 단지 그 기예능의 전승자가 생존을 위해 잔존해 있는 기예능만을 산발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정도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의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여 산업화와 시대에 제대로 전승될수 있는 보존정책이 만족스럽게 마련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형문화재의 예술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것은 산업화 및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민족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빈곤으로부터 빚어진 결과라 할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 지배문화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

원에서 문화정책이 제시 될 수 있을 때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왕궁문화를 포함한 지배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비로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대동성에 바탕을 두고 발달한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에 대한 조사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대동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자연의식(地緣意識)과 혈연의식(血緣意識)을 통한 생활감정 및 정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배타성만을 강조하므로써 몰가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인 문화보존력(文化保存力), 즉 문화환경과 경제력을 상실하므로써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 생활단위인 마을의 생활문화적 환경은 아파트나 대규모 인공 주거단지로 변함으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생활문화는 시골이라는 배경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속문화재는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단지 시골이라는 옛날의 생활문화 환경속에서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민속문화재가 새로운 생활환경과 유리된 채, 그리고 또 생활감정이나 정서와는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전승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결과 정치적 이념과 생활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한 간의 문화적 격차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기반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대동성에 근거를 둔 민속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앞으로 민족의 당면과제, 즉 통일문화의 형성과 세계화속의 한민족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제도의 차원이나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무형 및 민속문화재의 연구인력을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거나 연구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을 위한 교육제도적 차원에서는 학부과정으로 지방대학인 안동대학교에 민속학과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며, 학위과정으로서는 영남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 민속학 전공 석·박사학위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문화체육부 내에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연구인력과 함께 연구기관의 영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의 문화·예술 연구인력이나 전문인력, 그리고 그 교육 및 연구기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 및 교육정책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민족의 식민지적 경험을 겪은 나라의 문화정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리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민지 경험을 겪지 않은 나라의 문화정책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는 식민지 문화정책을 청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념에 정치적 이념에 의해 민족이 분단되고, 또 역사적으로나 문화정서적으로 전혀 생소한 문화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제대로 연구되고 보존될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교육 및 문화정책은 민족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